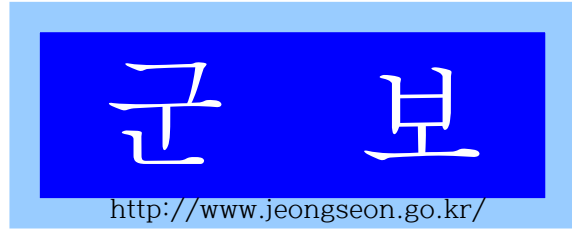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9호 2023. 2. 28. (화)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77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 정선군 공고 제2023-179호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3-202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11
- 정선군 공고 제2023-203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34
- 정선군 공고 제2023-205호 2025 정선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41
- 정선군 공고 제2023-212호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177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1)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 2) 제11조(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3)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4) 제27조(노후·유희시설의 정비 및 활용)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1)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주요내용

가.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목적 (안 제1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제9조)

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0조)

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안 제11조)

마.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안 제12조)

바.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폐지 (부칙)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3. 2. 15. ~ 2023. 2. 25.(10일간)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25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 - 560 - 2214

○ F A X : 033 - 560 - 2592

○ E-mail : lunarize@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정선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결격사유·수당지급에 관

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3.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지원 사업
4.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귀농귀촌 지원 사업
6. 가족친화·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업
7.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희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정선군 공고 제2023-179호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과 관련 제8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 의견수렴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3. 2. 15. ~ 2023. 3. 1.(14일간)

2. 의견제출 기간 : 2023. 2. 15. ~ 2023. 3. 2.

3. 의견제출

- 주 소 : (2612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보건행정팀
- 연락처 : 전화) 033-560-2152, FAX) 033-563-4000, E-mail) ironage0305@korea.kr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추진전략 별 세부 추진과제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정선군 공고 제2023-202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민선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2월 조직개편으로 부서(장)명 등 정비

- “여성청소년과(장)” → “가족행복과(장)” 등 조직개편사항 반영

나. 일괄개정조례 내용

연 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기획관실
2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행정국 가족행복과
3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행정국 가족행복과
4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국 안전과
5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행정국 안전과
6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7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8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9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10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설국 전략산업과
11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국 농업정책과

12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3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4	「농산물최저가격지원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5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6	「정선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관리사업소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3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정책과장, 시설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농업마케팅담당 주사로”를 “관련 업무 담당으로”로 한다.

제14조(「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마케팅담당 주사가”를 “관련 업무 담당이”로 한다.

제15조(「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시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정선군交通安全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교

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통관리사업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등) ①·② (생략)	제6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당연직위원: 부군수, <u>기획실장</u> , 회계과장, 환경과장, <u>문화관광과장</u> ,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1. ----- <u>기획관</u> ----- <u>관광과장</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 ----- -----.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총무행정관, <u>여성청소년과장</u> , 정선경	1. ----- --- <u>가족행복과장</u> -----

찰서 · 정선교육청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2. (생략) ③ · ④ (생략)	-----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3조(「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1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경제과장, <u>여성청소년과장</u>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2. (생략) ④ (생략)	제3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가족행복과장</u>-----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 · 운영 등) ① (생략)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u>건설과장</u>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 ·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안전과장</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④ (생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u>문화관광과</u> 과장·정선문화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 ----- ----- <u>문화체육과장</u> ----- -----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 설치) ①·② (생략)	제4조(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u>문화관광과</u>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 <u>문화체육과장</u> -----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5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문화관광과장과 정선
군의회 추천의원 1명을 당연직
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
화예술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
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생략)

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화체육과장-----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u>문화관광과</u> 장으로 한 다. ③·④ (생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문화체육과</u> 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 직 위원은 <u>경제과</u> 장, 농협중앙 회 정선군지부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 관련 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전략산업과</u> 장----- ----- ----- -----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다.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u>농업축산과장</u> , <u>농업기술센터소장</u> 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농업정책과장</u> , <u>시설국장</u> ----- ----- ----- ----- ----- ----- ----- ---
④ (생 략)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u>농업축산과장</u> 2.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 ----- ----- ----- ----- 1. ----- <u>농업정책과장</u> 2.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농업축산과장</u> 으로 한다.	2. ----- ----- <u>유통축산과장</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구성) ① ~ ④ (생략)	제16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u>농업축산과장</u> 으로 하고 서기는 <u>농업마케팅담당 주사</u> 로 한다.	⑤ ----- ----- - <u>유통축산과장</u> ----- <u>관련 업무 담당으로</u> -----.

제14조(「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 6. (생략)

⑤ (생략)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마케팅담당 주사가 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유통축산과장-----
-.

1.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관련 업무담당자 -----.

제15조(「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농업기술센터소장</u>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u>시설국장</u> ----- ----- -----.
③ <u>농업축산과장</u>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u>유통축산과장</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구성)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안전과장</u>	2. <u>교통관리사업소장</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주관부서
자연재난	①풍수해	행정안전부	안전과
	②대설·한파	행정안전부	안전과
	③낙뢰	행정안전부	안전과
	④가뭄	행정안전부	안전과
	⑤지진	행정안전부	안전과
	⑥황사	행정안전부	안전과
	⑦폭염	행정안전부	안전과
	⑧산사태	산림청	산림과
사회재난	⑨산불	산림청	산림과
	⑩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환경과
	⑪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환경과
	⑫댐붕괴	국토교통부	건설과
	⑬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청	안전과
	⑭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무행정관
	⑮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과
	⑯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전략산업과
	⑰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도시과
	⑱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축산과
	⑲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소
	⑳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소
	㉑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상하수도사업소
	㉒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교통관리사업소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주관부서
	㉓도로터널	국토교통부	도시과, 건설과
	㉔가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과
	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체육과
	㉖미세먼지	환경부	환경과
	㉗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총 4+ a 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a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1+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1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4) 재난 총괄부서 직원(2),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2)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5+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2) · 주관부서 직원(5)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중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총 4+ a 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 협업기능반 (a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1+α+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1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4) 재난 총괄부서 직원(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5+ α+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2) · 주관부서 직원(5)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군수	
부분부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31+ α + β + γ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나) 수습상황과악팀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2)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4)
2) 협업 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대응협업반(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 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 대대, 한국전력정선지사 등
현장지원반(γ 명)		·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정선군 공고 제2023-203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민선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규칙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2월 조직개편으로 부서(장)명 등 정비

- “문화관광과” → “관광과” 등 조직개편사항 반영

나. 일괄개정조례 내용

연 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기획관실
2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규칙」	기획관실
3	「정선군 정보공개규칙」	총무행정관실
4	「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	총무행정관실
5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설국 유통축산과
6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교통관리사업소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3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문화관광과”를 각각 “관광과”로 한다.

제2조(「정선군 정보공개규칙」의 개정) 정선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로”를 “총무행정관으로”로 한다.

제3조(「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의 개정) 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과”를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제4조(「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를 “유통축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정책과”를 “산림과”로 한다.

제5조(「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통관리사업소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캐릭터 : 기획관, 여행캐릭터 : <u>문화관광과</u> 4. (생 략)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 총무 행정관, 여행 브랜드슬로건 : <u>문화관광과</u> 6. · 7. (생 략) ② (생 략)	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관광과</u> --- 4. (현행과 같음) 5. ----- ----- <u>관광과</u> ----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정보공개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공개의 접수·처리) ① (생 략) ②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u>자치행정과</u> 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3조(정보공개의 접수·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총</u> <u>무행정관</u> 으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행정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총무행정관이 된다.
②·③ (생략)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 총무행정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농업축산과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 (생략) ③·④ (생략)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유통축산과장</u> ----- -----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u>농업축산과</u> (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신청품목 담당부서에 심사실시를 통보한다. 1. 2. (생략) 3.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u>산림정책과</u>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① ----- ----- <u>유통축산과</u>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산림과</u> -----

4. (생 략)

② ~ ④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2. 안전과장</u> 3. 삭 제 4. ~ 6.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2. 교통관리사업소장</u> 4. ~ 6.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23-205호

2025 정선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5 정선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2025 정선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9개 읍면 전체
- 다. 규 모 : 1,219,720,000㎡
- 라. 시행자 : 정선군

2. 공개내용

2025 정선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 공개기간 및 방법

- 가. 공개기간 : 2023. 2. 22. ~ 2023. 3. 7.
- 나. 공개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4. 기타 문의사항

-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3-212호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법제명 명시(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상위법령 적용 조항 현행화(제4조)

-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별표 1 공인의 규격 중 7. 철인」 삭제

다. 폐기 공인 이관(제10조)

- 「소각처리」 → 「정선군기록관으로 이관」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14일(20일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42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booktam@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공인조례”를 “정선군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정선군 및 소속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보관방법 등 정선군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공인의 내용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새기며”를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폐기기관의 관인명”을 “폐기공인의 이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정선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정선군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합의제 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3.0cm 정방형	청인
2. 군수	2.5cm 정방형	직인
3. 읍면장의 공인	2.1cm 정방형	"
4.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공인(보조기관 포함) 가.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경우 나. 6급 공무원인 경우	2.1cm 정방형 1.8cm 정방형	" "
5. 출장소장의 공인	1.6cm 정방형	"
6.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2cm 정방형 1.8cm 정방형	특수공인
7 철인	2cm 원형	<삭제>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공인조례</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정선군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 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 ⑤ (생략)	<u>정선군 공인 조례</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정선군 및 소속 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보관 방법 등 정선군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 ----- ----- ----- ----- ----- 따라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 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 -----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 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 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 다.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 ----- 한글----- -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 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 고 -----.
제6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신 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행정관에 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 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 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 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 ----- ----- -- 따라 ----- ----- ----. ----- ----- ----- -----.
② (생 략) 제7조(공인대장) 총무행정관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 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인대장) ----- ----- 따라 ----- ----- ----- ----- -----.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행정관	제8조(인영의 보존) -----

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생 략)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총무행정관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2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 따라 -----
-----.

제9조(공고) -----

-.

1. 2. (현행과 같음)

3. -----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정선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정선군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따라 --

의하여 총무행정관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총무행정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 따른 -----

-----.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